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Part 9는 두 종류의 자에게 적용됩니다. 첫째는 싱가포르 내 사업장에서 싱가포르 밖에서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파트너십입니다. 둘째는 싱가포르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싱가포르 밖에서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싱가포르 법인(유한책임파트너십 포함)입니다.[1]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범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는 이사, 직원 및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더라도 Part 9의 적용을 받습니다. 설립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주요 법률 중 하나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거나 면제를 받는 것, 해당 활동을 중단하는 것, 또는 싱가포르 법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디지털 토큰'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유형을 포괄하도록 정의됩니다. 첫째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상의 디지털 지급 토큰입니다. 둘째는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상 자본시장상품의 디지털 표창물입니다.[2] DPT도 자본시장상품도 아닌 유틸리티 토큰과 거버넌스 토큰은 Part 9의 적용 범위 밖에 있으며, 이는 다른 법률상의 취급과 일관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별표(Schedule)에 열거된 디지털 토큰 서비스는 지급서비스법상의 DPT 서비스 및 SFA상의 규제 대상 활동과 같은 구조를 띱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토큰의 거래, 교환 중개, 이전의 주선 또는 권유, 디지털 토큰 또는 그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보관, 그리고 디지털 토큰에 관한 자문이 포함됩니다.[3] 지급서비스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공자가 금전이나 토큰을 점유하지 않고 교환을 주선하지도 않는 순수한 기술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사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한 회사가 고객이 모두 중남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합니다. 창업자들은 두바이에 거주하고, 서버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며, 싱가포르 내 거점은 법인 비서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 사무소뿐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이전에는 이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싱가포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회사는 Part 9상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회사는 FSMA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데,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그 라이선스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회사는 본거지를 이전하거나 사업을 싱가포르 외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이 거주하는 법역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의 등록 사무소 하나만으로도 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

1. Rajah & Tann,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n line with FATF Enhanced Standards Commences on 30 June 2025", 2025년 6월, Part 9상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의 두 범주, 즉 싱가포르 내 사업장에서 영업하는 개인 및 파트너십과 LLP를 포함한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각각 싱가포르 밖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설명.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Allen & Gledhill, "Clarifications on licensing under Part 9 of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2025년 6월: 디지털 토큰은 암호화폐 및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지급 토큰과, 토큰화된 주식, 사채 및 펀드 지분 등 자본시장상품의 토큰을 포괄하며, 토큰화되지 않은 전통적 자본시장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
3. Bird & Bird, "Assessing the Scope of Part 9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2025, 규제 대상 디지털 토큰 서비스 열거: 디지털 토큰의 매수 또는 매도, 거래소 운영, 이전 주선, 타인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제공자가 토큰을 통제하는 경우의 보관, 디지털 토큰에 관한 자문.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